

정 관

전 문(前 文)

회사는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회사는 구성원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 나간다.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회사는 이해관계자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SK증권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라 한다)라 하며, 한글로는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K Securities Co.,Ltd.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 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신탁업
 5. 투자일임업
 6. 투자자문업
- ②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 업무 관련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영한다.
 1.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업무 및 보험중개사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6.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8.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12. 투자자 위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14.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15. 「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17.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8. 지급보증업무
 19.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0.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1.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22.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 2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 ③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 신고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영위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십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또한,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이외의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기준의 연1%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이익으로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차기 영업연도의 이익으로써 누적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발행주식이 모두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인 경우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주식으로 배정하며,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을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7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 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의5(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6(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⑤)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5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것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7(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⑥)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6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 상환청구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제7조6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준용한다.
 2.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8(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⑦)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7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4 ③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6 ③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9(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⑧)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8종 종류주식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류주식은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5 ③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7 ③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10(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⑨)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9종 종류주식은 회사 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4 ③항 또는 제7조5 ③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6 ③항 또는 제7조7 ③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11(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0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부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④항,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4 ③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6 ③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1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⑪)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1종 종류주식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부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류주식은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④항,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5 ③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7 ③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1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⑫)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2종 종류주식은 회사 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부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2 ②항부터 ④항, ⑥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4 ③항 또는 제7조5 ③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6 ③항 또는 제7조7 ③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14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

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공모증자 등) 삭제 (2008. 5. 30.)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 및 관계회사(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 내 수량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차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제7조의2~제7조의13에 규정한 ①종에서 ⑫종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원 또는 직원 전부에게 부여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삭제 (2022.3.24.)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

- 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3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2019. 3. 29.)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중 이천오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오백억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이천오백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오백억 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삭제 (2022.3.24.)

제14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 및 1개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신문에 공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기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

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25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삭제 (2020.3.25.)

제2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7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전체 이사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 자격요건, 선임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0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의2 삭제 (2004.5.28.)

제33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의하여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6. 각종 전문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별도로

로 정한다.

제35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의2 (이사회 권한 및 이사의 의무)

- ① 이사회 심의·결의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36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0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상기 제1호~제3호의 서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제42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거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임의 적립금
 5. 중간 배당에 따라 당해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삭제 (2022.3.24.)
- ⑤ 중간배당을 할 경우에는 제7조의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3조의3 (주식소각)

- ① 이 회사는 관련법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44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45조 (준용규정)

-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② 이 회사는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내규를 이사회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주식의 병합을 할 때 까지 변경전의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1988년 5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198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1조의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1조의 규정은 증권관리위원회
회의 인가를 받은 후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우선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0월 1일 이전 발행한 우선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회사가 개정상법 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의 배당은 종전 규정(보통주 배당률+1% 추가 현금 배당 우선주식)에 따른다.
 - ② 회사가 개정상법 시행일(1996년 10월 1일)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 배당률+1% 추가 현금배당 우선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신주인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분은 제8조의 한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및 제43조의2, 제43조의3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주식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 당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제43조의3 개정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34 및 35는 인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하며, 제6조는 액면분할 및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제5조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본 주총결의일로부터 액면분할 및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이십억주로 하기로 하며 그 익일부터는 다시 오억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관련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변경조치) 이 정관의 내용중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폐지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또는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신주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 (1)이 정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 및 배정하는 경우, 그와 같이 발행 및 배정된 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의 수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이 정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 및 배정하는 경우, 그와 같이 발행 및 배정된 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의 수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14,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